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설치기준 적정성 재검토주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및 설치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확대(안 별표1의2)

악어류,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의 경우 전종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은 일부종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전종으로 확대함.

나.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개편(안 별표1의3)

1) 기존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중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등의 우려가 적으며, 동물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적은 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함.

* (국명)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맥

시코도롱뇽 등 6종

2) 아시아코끼리는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설등록 대상종으로 추가함.

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2조, 제14조, 제39조)

1)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수출에 대한 과학적 검토기관을 명확히 함.

2) 몰수되거나 긴급보호조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현행화함.

3)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협약전 증명서 신청 접수·발급,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증명서 신청 접수·발급)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종”을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으로,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을 “국립생물자원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국립수산물과학원”으로 한다.

제1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제39조제2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 신고 접수, 증명서 발급

7의3.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신청 접수, 증명서 발급

별표 1의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국명	학명
식육목(CANIVORA)		
고양이과(Felidae)		
1	치타	<i>Acinonyx jubatus</i>
2	사자	<i>Panthera leo</i>
3	시라소니	<i>Lynx lynx</i>

4	푸마	<i>Puma concolor</i>
5	자가	<i>Panthera onca</i>
6	표범	<i>Panthera pardus</i>
7	호랑이	<i>Panthera tigris</i>
8	설표	<i>Uncia uncia</i>
곰과(Ursidae)		
9	말레이곰	<i>Helarctos malayanus</i>
10	반달가슴곰	<i>Ursus thibetanus</i>
11	아메리카검정곰	<i>Ursus americanus</i>
12	불곰	<i>Ursus arctos</i>

별표 1의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국명	학명
악어목(CROCODYLIA)		
13	알리게이터악어과 전종	Alligatoridae spp,
14	크로커다일악어과 전종	Crocodylidae spp.
15	인도악어과 전종	Gavialidae spp.
뱀목(SERPENTES)		
16	코브라과 전종	Elapidae spp.
17	살모사과 전종	Viperidae spp,

별표 1의3 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국명	학명
식육목(CA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1	작은발톱수달	<i>Aonyx cinereus</i>

별표 1의3 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국명	학명
거북목(TESTUDINES)		
돼지코거북과(Carettochelyidae)		

2	돼지코거북	<i>Carettochelys insculpta</i>
늑대거북과(Chelydridae)		
3	악어거북	<i>Macrochelys temminckii</i>
남생이과(Geoemydidae)		
4	남생이	<i>Mauremys reevesii</i>

별표 1의3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국명	학명
영장목 (PRIMATES)		
긴꼬리원숭이과(Cercopithecidae)		
1	동부콜로부스	<i>Colobus guereza</i>
2	필리핀원숭이 (계잡이원숭이)	<i>Macaca fascicularis</i>
3	일본원숭이	<i>Macaca fuscata</i>
4	히말라야원숭이	<i>Macaca mulatta</i>
5	돼지꼬리원숭이	<i>Macaca nemestrina</i>
6	검은짧은꼬리원숭이	<i>Macaca nigra</i>
7	보닛원숭이	<i>Macaca radiata</i>
8	사자꼬리원숭이	<i>Macaca silenus</i>
9	토크원숭이	<i>Macaca sinica</i>
10	그리벳원숭이	<i>Chlorocebus aethiops</i>
11	올리브개코원숭이	<i>Papio anubis</i>
12	다이애나원숭이	<i>Cercopithecus diana</i>
13	맨드릴	<i>Mandrillus sphinx</i>
14	브라자원숭이	<i>Cercopithecus neglectus</i>
15	사바나원숭이	<i>Chlorocebus sabaeus</i>
16	망토개코원숭이	<i>Papio hamadryas</i>
17	모나원숭이	<i>Cercopithecus mona</i>
거미원숭이과 (Atelidae)		
18	검은이마거미원숭이	<i>Ateles geoffroyi</i>
올빼미원숭이과 (Aotidae)		
19	세줄무늬올빼미원숭이	<i>Aotus trivirgatus</i>
로리스과 (Lorisidae)		
20	순다로리스	<i>Nycticebus coucang</i>

사람과(Hominidae)		
21	침팬지	<i>Pan troglodytes</i>
22	고릴라	<i>Gorilla gorilla</i>
23	오랑우탄	<i>Pongo pygmaeus</i>
긴팔원숭이과(Hylobatidae)		
24	큰긴팔원숭이	<i>Symphalangus syndactylus</i>
25	검은벧긴팔원숭이	<i>Nomascus concolor</i>
26	흰손긴팔원숭이	<i>Hylobates lar</i>
여우원숭이과(Lemuridae)		
27	알락꼬리여우원숭이	<i>Lemur catta</i>
꼬리감는원숭이과(Cebidae)		
28	흰머리카푸친	<i>Cebus capucinus</i>
29	비단마모셋	<i>Callithrix jacchus</i>
30	검은술마모셋	<i>Callithrix penicillata</i>
31	다람쥐원숭이속 전종	<i>Saimiri</i> spp.
32	검은머리카푸친	<i>Cebus apella</i>
33	목화머리타마린	<i>Saguinus oedipus</i>
소목(ARTIODACTYLA)		
소과(Bovidae)		
34	바바리양	<i>Ammotragus lervia</i>
35	마르코염소	<i>Capra falconeri</i>
36	흰오릭스	<i>Oryx dammah</i>
사슴과(Cervidae)		
37	바라싱가	<i>Rucervus duvaucelii</i>
낙타과(Camelidae)		
38	과나코	<i>Lama guanicoe</i>
페커리과(Tayassuidae)		
39	목도리페커리	<i>Tayassu pecari</i>
말목(PERISSODACTYLA)		
말과(Equidae)		
40	몽골야생말	<i>Equus przewalskii</i>

별표 1의3 제4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국명	학명
식육목(CANIVORA)		
물개과(Otariidae)		
1	남아메리카물개	<i>Arctocephalus australis</i>
고래목(CETACEA)		
참돌고래과(Delphinidae)		
2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i>Tursiops truncatus</i>
3	남방큰돌고래	<i>Tursiops aduncus</i>
코끼리목(PROBOSCIDEA)		
코끼리과(Elephantidae)		
4	아시아코끼리	<i>Elephas maximus</i>

별표 1의3 제4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국명	학명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5	참매	<i>Accipiter gentilis</i>
6	말뚝가리	<i>Buteo buteo</i>
7	흰꼬리수리	<i>Haliaeetus albicilla</i>
8	참수리	<i>Haliaeetus pelagicus</i>
9	붉은허벅지말뚝가리	<i>Parabuteo unicinctus</i>
10	달마수리	<i>Terathopus ecaudatus</i>
11	독수리	<i>Aegypius monachus</i>
콘돌과(Cathartidae)		
12	큰콘돌	<i>Vultur gryphus</i>
파랑새목(CORACIIFORMES)		
코뿔새과(Bucerotidae)		

13	붉은코뿔새	<i>Aceros nipalensis</i>
----	-------	--------------------------

별표 1의3 제4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국명	학명
뱀목(SERPENTES)		
왕뱀과(Boidae)		
14	듀메릴보아구렁이	<i>Acrantophis dumerili</i>
15	그린아나콘다	<i>Eunectes murinus</i>
16	노랑아나콘다	<i>Eunectes notaeus</i>
도마뱀목(SAURIA)		
이구아나과(Iguanidae)		
17	그린이구아나	<i>Iguana iguana</i>
악어도마뱀과(Xenosauridae)		
18	악어도마뱀	<i>Shinisaurus crocodilurus</i>
테구도마뱀과(Teiidae)		
19	콜롬비아골드테구	<i>Tupinambis teguixin</i>
왕도마뱀과(Varanidae)		
20	물왕도마뱀	<i>Varanus salvator</i>

별표 1의3 제4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국명	학명
장수도롱뇽과(Cryptobranchidae)		
21	중국장수도롱뇽	<i>Andrias davidianus</i>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육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3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미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4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u>멸종위기종</u> 중 살아 있는 종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u>관계 국공립 연구기관</u> 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생략)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멸종위기종</u> 및 그 가공품----- ----- ----- ----- <u>국립생물자원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국립수산물과학원</u>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7. (생략)	제14조(보호시설 등) -----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 <u>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국립생태원</u> 5. ~ 7.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8. ~ 31. (생략)

③ (생략)

같음)

② _____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
른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 신고
접수, 증명서 발급

7의3.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따
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
작된 악기 인증서 신청 접수,
증명서 발급

8. ~ 3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연 락 처	(044) 201 - 7244